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
	보도	2019.10.18.(금) 조간	배포	2019.10.17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 (02-2100-2680)	담 당 자	심원태 사무관 (2100-2688)

제 목 :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◆ **과태료 부과기준*을 신설하여 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, ②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**

*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·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

Ⅰ 주요 개정내용

1.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□ 자본시장법 상 **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**의 특성*을 고려한 **과태료 부과기준 신설**

* 동 위반행위는 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·조치 대상이며 ②금융회사 外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·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

2.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*

*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('18.5월) 등의 후속조치

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**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** 마련

(현행) 검사·제재규정

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100%	80%	60%
보 통	80%	60%	40%
경 미	60%	40%	20%

➔

(개선) 조사업무규정

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100%	90%	75%
보 통	90%	75%	50%
경 미	75%	50%	25%

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**불공정거래에 이용**된 경우 **50%까지 가중**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

1 **소액공모**(공모금액 10억원 미만) 공시 위반과 **증권신고서**(10억원 이상) 제출의무 위반의 **제재 불균형 완화**

○ 현행 규정은 **동일 유형 위반**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**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** 수준이 **더 높게 산정**

○ **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**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**30%까지 감경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자진시정·신고**의 경우에는 **감경폭**을 **더욱 확대**(최대 50%)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

(예시) 소액공모 과태료 > 증권신고서 과징금

1 **위반금액**이 **9.9억원**인 경우(소액공모)

동기 / 위반결과	상(고의)	중(중과실)	하(과실)
중 대	60백만원	48백만원	36백만원
보 통	48백만원	**36백만원**	24백만원
경 미	36백만원	24백만원	12백만원

2 **위반금액**이 **10억원**인 경우(증권신고서)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30백만원	24백만원	18백만원
해당사항 없음	24백만원	**18백만원**	12백만원
하향조정사유 발생	18백만원	12백만원	6백만원

⇒ **감경사유·폭 확대**로 최대 감경비율(50%) 적용시 **과태료 18백만원** (36백만원 X 50%)

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**경미**한 경우, **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**

○ 현행 규정은 **증권신고서**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**경고조치**가 **가능**하나, **소액공모** 위반은 **과태료 부과**

○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**경미**하여 **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**한 경우에는 **경고·주의조치로 갈음**할 수 있도록 함

3 동일 규제 위반으로 **가중되는 기간**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**동일하게 축소**(5년 → 1년)

Ⅱ 향후계획

□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**규정변경예고**('19.10.17일~11.26일) 및 규제·법제 심사 등을 거쳐 **시행**('20.1분기중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